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편의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0명 이내의 조사요원을 위촉하도록 정함(안 제4조).
- 다. 조사요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요원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7조).
- 마. 편의시설의 유지·관리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요원을 통한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8조)
- 바. 편의시설 유지·관리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시설의 장은 편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요원의 위촉)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 내 편의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의 조사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장애학생의 학부모
4. 그 밖에 건축, 시설, 안전,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조사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조사요원의 업무) ①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점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의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요원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7일 이내에 업무에 참석한 전원의 확인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설치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전현장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사요원에 의한 사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전현장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현장조사를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유지·관리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2명 이상의 조사요원을 통한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조사 결과를 대 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사립학교 지원) ① 사립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사립유치원을 포함한다)는 사립학교의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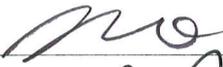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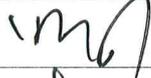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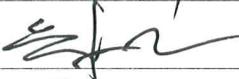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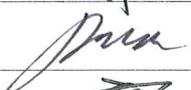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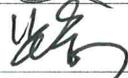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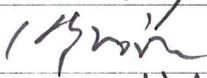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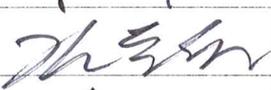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大修繕)·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
발 의 의 원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비 고
1	구 의정		
2	박 병채		
3	원 인근		
4	박 상욱		
5	송 대원		
6	조 원희		
7	박 리희		
8	정기현		
9	권 동해		
10	김 경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